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 27.(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94호)

나. 회부일자 : 2024. 5. 28.

다. 상정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4.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표근 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조 ~ 제4조)
- 3) 반부패 · 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안 제5조 ~ 제6조)
- 4) 청렴정책자문협의회 설치(안 제7조 ~ 제12조)
- 5) 청렴도 조사 및 교육 (안 제13조 ~ 제15조)
- 6)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7) 구정 청렴시책사업 관련 포상 등(안 제18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 2024. 4. 18 ~ 5. 8. (20일간), 접수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성북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 4조에서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교육 및 홍보사업, 청렴도 평가·조사, 청렴 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청렴문화 조성 및 종합계획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정책자문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에서는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설문조사는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¹⁾에 근거하여 성북구 공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직자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등 청렴 규정 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8조 1항 중 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양성평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위함.

나. 수정 내용

- 제8조 제1항 중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반부패·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⑤ 협의회의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다.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4
----------	--------

제안 연월일: 2024년 6. 27.(목)

제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8조 1항 중 협의회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양성평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위함.

2. 주요내용

- 제8조 제1항 중 “구성하며, 협의회위원은 반부패·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협의회위원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⑤ 협의회위원의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반부패·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회의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 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u>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u> <u>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u> <u>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반부</u> <u>패·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u> <u>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성이 있</u> <u>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성별</u> <u>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u> <u>다.</u> <u><신 설></u> <u>②·③ (생 략)</u> <u><신 설></u>	<u>제8조(협의회 구성) ① -----</u> <u>-----</u> <u>-----구성</u> <u>한다.</u> <u>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법률,</u> <u>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u> <u>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u> <u>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u> <u>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u> <u>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구청</u> <u>장이 위촉한다.</u> <u>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u> <u>같음)</u> <u>⑤ 협의회의 구성 시 성별은</u> <u>「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u> <u>기본 조례」에 따른다.</u>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 기관에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나.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반부패·청렴 종합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 종합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 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렴정책자문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종합계획

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정책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⑥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자문내용과 자문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청렴정책회의)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청렴정책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제15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8조(포상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 27.(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99호)
나. 회부일자 : 2024. 5. 28.
다. 상정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4.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신신재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3조, 안 제5조~제10조)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현행화(안 제3조~제4조, 안 제9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 명칭 변경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1)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4. 4. 18.(목) ~ 5. 8.(수), 의견제출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왔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2조제1호²⁾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³⁾ : 문화재 → 국가유산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

3)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기록물 업무 담당과장 및 문화재(→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

○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⁴⁾ :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 보호구역 → 국가유산 보호구역

○ 안 제4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2호⁵⁾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⁶⁾ : 문화재 → 국가유산

○ 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4호⁷⁾ : 문화재 → 국가유산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5)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6)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7)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 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⁸⁾ : 문화·예술·문화재 → 문화·예술·국가유산

○ 안 제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⁹⁾ : 문화재 → 국가유산

○ 안 제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¹⁰⁾ :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유산

제21조제4항제1호¹¹⁾ : 문화재위원 → 국가유산위원

제33조¹²⁾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호¹³⁾ : 문화재보호구역 → 국가유산 보호구역

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8) 제11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문화·예술·문화재(→문화·예술·국가유산)**, 도서관 지원, 생활체육, 여가 지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0조(예산 지원 등)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문화재(→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0) 제16조(자료 구입) ② 구청장은 경매 구입,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및 그 밖의 자료를 긴급하게 공개 구입 또는 현지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11) 제21조(자료평가위원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1. 자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위원(→국가유산위원)** 및 전문가

12)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13)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중 「문화재 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24. 5. 20. 제정·시행되었기에 안 제3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 내용

○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

수정안 조문대비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3. 문화재보호구역(→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 ----- ----- -----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9
----------	--------

제안 연월일: 2024년 6. 27.(목)

제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중 「문화재 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24. 5. 20. 제정·시행되었기에 안 제3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의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국가유산으로 --- ----- 국가유산 보호구역 ----- ----- ----- ----- -----.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 ----- -----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문화·예술·문화재”를 “문화·예술·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을 “국가유산위원”으로 한다.

제33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u>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u> 수리공사를 말한다.	1. ----- ----- <u>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1. 민간기록물 업무 담당과장 및 <u>문화재</u> 업무 담당과장	1. ----- -- <u>국가유산</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국가유산으로 --- 국가유산 보호구역 ----- ----- -----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생략)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

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조-----
3. ~ 12. (생략)	-----
② 삭제	3. ~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략)	-----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	-----
6. (생략)	----- <u>국가유산</u> -----
	6. (현행과 같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 재, 붕괴	4. ----- ----- <u>국가유산</u> ----- -----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3. <u>문화·예술·문화재</u> , 도서관 지원, 생활체육, 여가지원, 문 화·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5. (생략)	제11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문화·예술·국가유산</u> ----- ----- ----- 4. 5.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예산 지원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u>문화재</u> , 자연 공원	제10조(예산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국가유산</u> -----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
---------------------------------------	-----------------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자료 구입)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경매 구입, 국가 또는 시·도 <u>지정문화재</u> 및 그 밖의 자료를 긴급하게 공개 구입 또는 현지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구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지정문화유산</u> ----- ----- ----- ----- -----.
제21조(자료평가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1. 자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u>문화재위원</u> 및 전문가 2. 3. (생략) ⑤ (생략)	제21조(자료평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u>국가유산위원</u> ----- 2.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u>「문화재보호</u>	제33조(준용) ----- ----- ----- ----- <u>「문화유산의 보</u>

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u>준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 ----- ----- ----- -----.
--	--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생략) 3. <u>문화재보호구역</u> ,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 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4. 5. (생략)	제5조(설치장소) ----- ----- -----. 1. 2. (현행과 같음) 3. <u>국가유산 보호구역</u> ----- ----- ----- ----- -----. 4. 5. (현행과 같음)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른 명칭 관련 조문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기획예산과장 김 종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 27.(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95호)
나. 회부일자 : 2024. 5. 28.
다. 상정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4.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신신재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을 생략한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제4호)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변경 (안 제16조)
- 3)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하향 및 횟수 확대(안 제33조, 제91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초지법」, 「정부조직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입법예고 : 2024. 4. 18. ~ 5. 8.(20일간), 별도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 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제명을 상위법과 통일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개정함.
- 안 제4조제2항제4호 삭제 : 법 제16조제2항¹⁴⁾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시 자치단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4조제2항제4호¹⁵⁾

14)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 6. 생략

를 삭제하였음.

- 안 제33조제2항, 제3항 : 영 제32조제2항의 개정¹⁶⁾ (2023. 8. 22. 개정·시행)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이 50만원으로 하향 및 분할 횟수가 확대됨. 그러나 신·구조문 대비표의 안 제33조제2항의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가 삭제되었어야 하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 됨.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 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 ----- ----- -----.

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16) 개정전)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개정후)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제2항

	현행	개정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9개월 이내 6회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12개월 이내 12회

▶ 제3항 벤처기업

	현행	개정
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6개월 이내 3회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9개월 이내 6회
1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6회	12개월 이내 12회

○ 안 제91조제1항 : 영 제81조제1항¹⁷⁾(2023. 8. 22. 개정·시행)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 가능 기준금액이 50만원 하향 및 분할 횟수를 조정함.

그러나 안 제91조제1항제4호의 “400만원 이하” 또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정안>

개정안	수정안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조제목 개정 2013.12.31)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조제목 개정 2013.12.31) ① ----- -----

17)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300만원 <u>초과</u> 400만원 <u>이하</u> : 3 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③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u>초과</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제1항

	현행	개정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1년 이내 6회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2년 이내 9회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3년 이내 12회

○ 안 제91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가 신설 된 것은 2023년 8월 22일 영 제81조 제4항¹⁸⁾이 개정됨에 따라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신설한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법 개정 사항 중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18)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2023. 8. 22.>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33조제2항의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가 삭제되었어야 하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 제33조제2항을 수정 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91조제1항제4호의 “400만원 이하” 또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수정 내용

-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 을 “영 제32조제2항” 으로 수정
- 제91조제1항제4호 중 “초과 400만원 이하” 를 “초과” 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5
----------	--------

제안 연월일: 2024년 6. 27.(목)

제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3조제2항의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가 삭제되었어야 하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 제33조제2항을 수정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1조제1항제4호의 “400만원 이하” 또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수정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을 “영 제32조제2항”으로 수정
- 제91조제1항제4호 중 “초과 400만원 이하”를 “초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을 “영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91조제1항제4호 중 “초과 400만원 이하”를 “초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② 대부료가 100만원 을 초과하여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 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 12개 월 이내 6회 범위에 서 분납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50만원 초과 100만 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12개 월 이내 12회 범위에 서 분납 ③·④ (생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 제32조제2항</u>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 부) (조제목 개정 2013. 12.31) ① 영 제81조제 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1년 이내 4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 부) (조제목 개정 2013. 12.31) ① ----- ----- ----- ----- -----. 1. 50만원 초과 100만 원 이하 : 6개월 이내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 부) (조제목 개정 2013. 12.31)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회 범위에서 분납</u> 2. <u>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u> 3. <u>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u> 4. (삭제 2013.3.28.) ② · ③ (생략)	<u>3회 범위에서 분납</u> 2. <u>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 3. <u>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u> 4. <u>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u> ② · ③ (현행과 같음)	4. ----- <u>초과</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따르되”를 “따르며,”로,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17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2조 중 “감액율”을 “감액률”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을 “영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3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에게”를 “지방자치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관리관이”를 “물품운용관이”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주관부서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1조의2를 제92조의2로 하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u>	<u>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u>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그 <u>밖의</u>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른」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 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 경 또는 용도폐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밖에</u> ----- ----- -----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

7조에 <u>따르되</u> 그 기산일은 <u>기부 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u> 기준으로 한다.	--- <u>따르며</u> , ----- <u>사용 허가를 받은 날</u> ----- ----- -----.
제17조(관리) (조제목 개정 2013. 3.28) <u>관리책임 공무원</u> 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 ----- --- <u>재산관리관</u> ----- ----- ----- -----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u>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u>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u> -----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초지법</u> 」 제18조에 따른 <u>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u>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생략)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⑤·⑥ (생략)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④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감액
률-----.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

-----.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u>6회 범위에서 분납</u>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④ (생략)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u>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u> 3.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③ ----- ----- ----- ----- -----. 1. 5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 ----- ----- ----- -----
---	---

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 6. (생략)

7. 성북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 (생략)

② ~ ⑥ (생략)

제65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관리관이 제64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7조(기증품의 취득) ① (생략)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

----- 지
방자치단체에 -----

2. ~ 6. (현행과 같음)

7. -----

-- 국가보훈부장관-----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기증품의 취득)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운용관-----

-----.

③・④ (생략)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조제 목 개정 2013.12.31) ① 영 제81 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 회 범위에서 분납 4. (삭제 2013.3.28.) ②・③ (생략) <신설> 제91조의2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조제 목 개정 2013.12.31) ① ----- ----- ----- ---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 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 회 범위에서 분납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 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 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 식에 따라 변상금징수유예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2 (현행 제91조의2와 같 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재무과장 우경죽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 27.(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14. 강수진 의원 외 11인 발의 (의안번호 306호)
나. 회부일자 : 2024. 5. 28.
다. 상정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5.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수진 의원)

가. 제안이유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함
(안 제2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3) 사전협의 : 도시안전과
- 4)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을 다음과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¹⁹⁾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세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아.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자.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다.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확대하고자 하

19)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14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양순임, 이관우,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운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도시안전과

라.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성북”을 “성북구”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

사.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아.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치매환자 ☐ 지하층 거주	☐ 소방차 통행곤란 ☐ 화재예방 강화지구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성북</u>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u> ----- <u>성북구</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u>성북구</u>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 ----- ----- ----- -----.
가.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제2조----- -----
나. 「 <u>장애인복지법</u>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 <u>장애인복지법</u> 」 제2조-----
다. 「 <u>한부모가족지원법</u> 」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 <u>한부모가족지원법</u> 」 제4조-----

라. 「<u>청소년 기본법</u>」 제3조 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u>노인복지법</u>」에 따른 <u>홀로 사는 노인</u> 바.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 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 (생 략) 2. (생 략)	라. 「<u>청소년 기본법</u>」 제3조 ----- --- 마. 「<u>노인복지법</u>」에 따른 6 <u>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 부부 거주 세대</u> 바.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 <u>2조</u>----- 사. 「<u>치매관리법</u>」 제2조에 <u>따른 치매환자</u> 아. 「<u>건축법</u>」에 따른 지하 <u>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 하는 주택</u> 자. <u>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 역에 위치한 주택</u> 차. <u>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 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u> 카. (현행 사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 27.(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14. 경수현 의원 외 11인 발의 (의안번호 307호)

나. 회부일자 : 2024. 5. 28.

다. 상정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5.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2)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안 제3조)
- 3) 임원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 보완(안 제4조)
- 4) 단장 또는 단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추가(안 제5조)

- 5) 소집수당 근거 마련(안 제8조)
- 6) 교육 및 훈련 시간 조정(안 제14조)
- 7) 재해보상 규정 신설(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 및 제6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 2) 예산조치 : 소집수당(16,288천원), 재해보상금(3,000천원) 예산 가편성
- 3) 사전협의 : 도시안전과
- 4)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 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조문 검토

- 조례명 변경 : 법에 따라 자율방재단에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하였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 지역자율방재단

○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법 제66조²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²¹⁾**에 따라 방재단의 구성, 임기, 해임 및

20)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1)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

해촉, 임무, 소집, 운영, 지원, 감동, 금지행위, 출입증 발급, 교육 및 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부서에서도 파악되지 않을뿐더러, 조례 제정 이후 구성된 적이 없는 바, 조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안 제 7조에서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법 제66조제2항²²⁾ 및 시행령 제65조²³⁾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9

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2)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3)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급 일 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9,860원)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단장으로부터 활동계획서를 제출 받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식대, 여비, 유류대, 보험가입비, 제복, 모자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임.
- 안 제11조에서는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 13조에서는 단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재난현장 출입을 위해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영 제62조제1항24)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도록 하였음.
- 안 제16조에서는 법 제66조제3항25) 및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26)

24)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5)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26)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7.>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방재단 구성원의 방재활동 참여 및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 제66조제3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는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할 때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이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및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31.]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조문의 자구정정(안 제3조)
- 현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부족해보이므로 향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안 제6조)

나. 수정 내용

- 안 제3조제4항 본문 중 “등(이하 “단체” 라 한다)” 을 “(이하 “단체” 라 한다)등” 으로 수정
같은 조 제7항 중 “대표는” 을 “대표” 로,
“한다)” 를 “한다)는” 으로 수정
-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7
----------	--------

제안 연월일: 2024년 6. 27.(목)

제 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자구정정(안 제3조)
- 현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부족해보이므로 향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안 제6조)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4항 본문 중 “등(이하 “단체” 라 한다)” 을
“(이하 “단체” 라 한다)등” 으로 수정
같은 조 제7항 중 “대표는” 을 “대표” 로,
“한다)” 를 “한다)는” 로 수정
-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 본문 중 “등(이하 “단체”라 한다)”을 “(이하 “단체”라 한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표는”을 “대표”로, “한다)”를 “한다)는”으
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기업체·기관·학교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 ----- ----- (이하 “단체”라 한다)등-----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동 방재단 <u>대표</u> 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⑦ ----- <u>대표</u> ----- ----- <u>한다</u>)는 -----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u>구성</u> 한다.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 ----- ----- ----- ----- ----- <u>구성</u> <u>할 수 있다.</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동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 ·

기업체·기관·학교(이하 “단체”라 한다)등 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⑧ 동 방재단의 운영은 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 한다.

④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7.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9. 재해 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 ③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 한다.
 - ④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어 구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 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9급 일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한다.

⑤ 제8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단장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③ 제2항 각 호의 경비 및 물품에 관한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3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 연 4시간 이상

2. 훈련 :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원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제3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제3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여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붙임]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게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illegible]

활동확인서

(제9조제1항 관련)

성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 확인자는 동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활동확인서는 단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증빙서류 첨부 후 단장에게 제출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9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	반 명	성 명	활동 제목	활동상황		봉사 시간	비고
				활동일자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붙임]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제10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안전과 연계하여 작성

출 입 증

(제13조 관련)

출 입 증 사진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 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인)
---	--

5.5cm

7.7cm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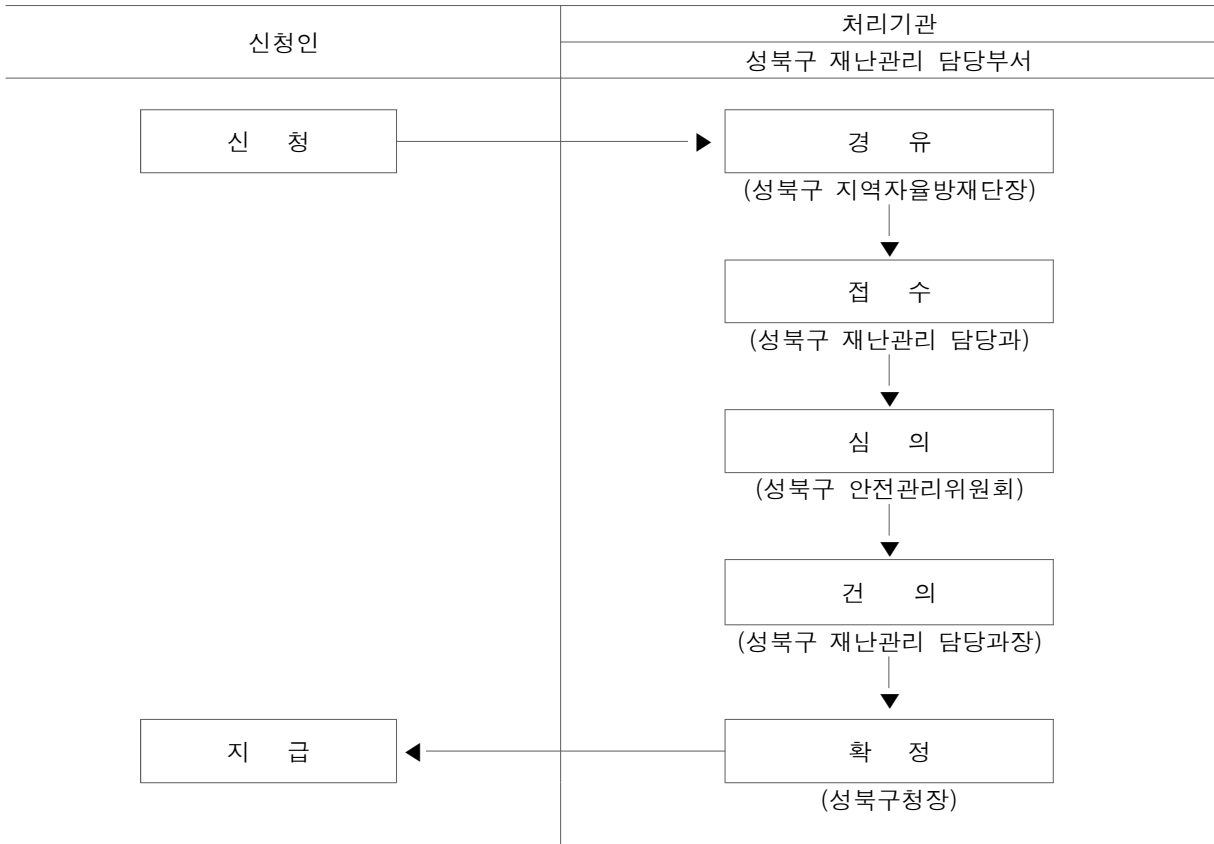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 27.(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96호)
- 나. 회부일자 : 2024. 5. 28.
- 다. 상정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5.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청년인구가 관내 총인구의 30%에 해당하고 서울시 자치구 내 대학 소재율 1위임에 따라 청년 인프라가 풍부하며, 청년 역량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성북구를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2)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구청장의 책무 및 원칙(안 제3조~제4조)
- 3)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8조)
- 5) 정책연구 등 실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제10조)

6)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실시(안 제11조~제12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나)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4. 4. 18. ~ 2024. 5. 8. (20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정 취지

- 본 제정제정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3. 12. 13(수) 국무조정실은 각 자치단체별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추진 정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청년이 동시에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작동기제로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²⁷⁾에 근거하여, 청년친

27)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화적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지정단위는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임.

- 청년친화도시는 ' 24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지정하여 2028년
까지 25개 내외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지정 신청, 국
무조정실의 조성계획 검토, 국무총리의 지정 및 공표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는 제정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사
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2조 정의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한
바,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²⁸⁾에 따르면 “19세 이상 34세 이
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²⁹⁾에서는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 2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
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청년의 나이 규정을 상향할 방침이라 함.

- 안 제3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 구축,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추진, 청년과 구민의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30)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0) 제5조(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21.5.6.)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법인 ·

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3.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⑫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제정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96
------------	-----

제출년월일 : 2024년 6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청년인구가 관내 총인구의 30%에 해당하고 서울시 자치구 내 대학 소재율 1위임에 따라 청년 인프라가 풍부하며, 청년 역량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성북구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구청장의 책무 및 원칙(안 제3조~제4조)
-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 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8조)
- 마. 정책연구 등 실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제10조)
- 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실시(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4. 4. 18. ~ 2024. 5. 8. (20일간))

2)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대상아님)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구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정책연구 등),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2조(교육 및 홍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

4. 작성자

안전생활국 일자리정책과장 이 정 희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 27.(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97호)
나. 회부일자 : 2024. 5. 28.
다. 상정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봉제 소공인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4. 8. 31.)에 따라 효과적인 패션봉제업 지원을 위하여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고(現 위탁기관)
		대지	건물		
성북스마트 패션산업센터	성북구 보문사길 45 (보문동)	241.3㎡	591.53㎡ 지하1/지상4	2021.12.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위탁기간 2021.9. ~ 2024.8.)

2) 위탁기간 : 2024. 9. 1. ~ 2026. 12. 31.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 4개월)

3) 위탁방법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의결에 따른 재계약

4)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5) 위탁사무의 범위

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됨(2024. 8. 31.)에 따라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³¹⁾에 따라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위탁대상 현황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보문사길 45(보문동)
- 위탁기관 :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2021. 9. 1. ~ 2024. 8. 31. 3년)
- 운영예산 : 6억4,583만원
- 인력현황 : 정규인력 7명(센터장1, 본부장1, 행정1, 기술분야3, 마케팅1)
- 규 모 : 대지 241.3㎡(약 73평), 연면적 591.53㎡(약179평, 지하1층/지상4층)
- 시설 내용

구분	구분	주요장비 및 용도	근무인원	면적
4층	청년 큐베이팅/사무실	회의실 테이블, 사무실	3	86.35㎡ (26.2평)
3층	디자인실,패턴실,샘플실	디자인 및 패턴, 샘플작업 지원	(외부2)	120.47㎡ (36.5평)
2층	공동 작업실	공동작업 지원, 특종장비14종 비치	(외부1)	108.27㎡ (32.8평)
1층	전시판매장	공동전시판매장, 라운지카페	1 (외부1)	108.27㎡ (32.8평)
지하1층	스마트 장비실	CAD, CAM 작업 및 자동연단	3	168.17㎡ (51평)
합계			11명	591.53㎡ (179.2평)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탁예정기간 : 2024. 9. 1. ~ 2026. 12. 31. 2년 4개월)
- 위탁방법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의결에 따른 재계약

○ 구청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주요 사무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이며, 위탁범위는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공동작업 지원, 공동판매 및 전시 등으로 지역 내에 구직을 원하는 은퇴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훈련과 지원을 통한 맞춤형 봉제 실무인력 양성과 지역주민의 능력개발로 고용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 종합 의견

○ 성북구 패션봉제산업은 신규인력 진입 단절 현상으로 인하여 상시적 인력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싱사와 같은 숙련공 부족이 두드러짐. 이에 영세 소공인의 기술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는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297
----------	-----

제출년월 : 2024년 6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봉제 소공인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위탁기간의 만료일(2024. 8. 31.)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고(現 위탁기관)
		대지	건물		
성북스마트 패션산업센터	성북구 보문사길 45 (보문동)	241.3㎡	591.53㎡ 지하1/지상4	2021.12.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위탁기간 2021.9. ~ 2024.8.)

나. 위탁기간 : 2024. 9. 1. ~ 2026. 12. 31.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 4개월)

다.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마. 선정방식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위탁)

-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 27.(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00호)
- 나. 회부일자 : 2024. 5. 28.
- 다. 상정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변경이유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금설치 개요

- 가)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
- 나)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
- 다) 설치연도 : 2023. 7. 13.

라) 기금의 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2)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개요

가) 운용계획 변경 사유 :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증 37,848원)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 목표모금액 12,000천원보다 37,848천원 증액모금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기금규모(수입·지출)	32,381천원	70,229천원	37,848천원

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2024년 수입계획				2024년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32,381	70,229	37,848	합 계	32,381	70,229	37,848
전입금	-	-	-	비용자성사업비	-	-	-
보조금	-	-	-	용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용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12,064	49,912	37,848	예치금	32,381	70,229	37,848
예수금	-	-	-	차입금원리금 상환	-	-	-
이자수입	317	317	-	예수금원리금 상환	-	-	-
기타수입	20,000	20,000	-	기타지출	-	-	-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 (고향사랑기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변경 취지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임.

나. 조문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³²⁾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20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당초계획 지출액 3,238만원보다 116.9%인 3,784만원이 증액된 7,022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성북구 고향사랑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³³⁾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3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고향사랑기금)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관한 법률」 제4조제1항³⁴⁾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임.

다. 종합 의견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3.]

34)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00
----------	-----

제출년월 : 2024년 6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변경이유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
- 2)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
- 3) 설치연도 : 2023. 7. 13.
- 4) 기금의 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나.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개요

- 1) 운용계획 변경 사유 :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증 37,848원)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 목표모금액 12,000천원보다 37,848천원 증액모금
 - 2024년 고향사랑기금 규모

예치금회수액 ① (2023년도 기부금)	2024년도 기금수입 예상액 ②	2024년 최종 기금예산액 (①+②=③)
49,912천원	20,317천원	70,229천원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2024년 수입계획				2024년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32,381	70,229	37,848	합 계	32,381	70,229	37,848
전입금	-	-	-	비용자성사업비	-	-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2023년 기부액)	12,064	49,912	37,848	예치금	32,381	70,229	37,848
예수금	-	-	-	차입금원리금 상환	-	-	-
이자수입	317	317	-	예수금원리금 상환	-	-	-
기타수입	20,000	20,000	-	기타지출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고향사랑기금)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생략

4. 작성자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장 고 영 룡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 27.(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01호)
- 나. 회부일자 : 2024. 5. 28.
- 다. 상정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7.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조례의 별표1 시설 목록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문화예술시설 명칭 추가 (안 별표1)
- 2)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중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신설(안 별표2)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입법예고 : 2024. 4. 18. ~ 2024. 5. 8. (20일간),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1과 별표2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시설 개요

- ▶ 시설명 :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 ▶ 위치 : 성북구 장월로8길 38 (장위동 68-130)
- ▶ 규모 : 대지 516㎡(156평), 연면적 998.57㎡(302평) / 지상5층
- ▶ 건립예산 : 54억원 (국 6억6,700만원 / 시 25억원 / 구 18억8,900만원 / 특교 3억4,400만원)
- ▶ 시설구성

층수	시설구성	연면적(㎡)
계		998.57
1층	지평식 주차장(자주식 5대, 장애인 1대) / 기계식(승강기식) 주차장 입구	116.78
2층	[커뮤니티 라운지] 안내데스크, 모임 및 창작공간 / 직원 사무실	228.49
3층	[플레이 그라운드] 문화놀이터, 수유실, 유아 문화예술프로그램	226.30
4층	[액티브 그라운드] 미디어랩, 사운드랩, 퍼포먼스랩	223.82
5층	[멀티 그라운드] 다목적실, 학습공간(세미나실)	203.18
옥상	옥상	-
주차장	기계식(승강기식) 19대 - SUV 5대, 승용 14대 / 자주식 5면, 장애인 1면	-

- ▶ 시설 운영 : 위탁운영(문화체육과 ➡ 성북문화재단)
- [시범운영] '24. 3월 ~ 6월 / [정상운영] '24. 7. 1. 이후
- 운영일시 : 매주 화~토요일 10:00~18:00 ※ 일·월요일, 공휴일 휴관
- 운영예산 : 2억4,866만원(재단 출연금)
- 사업내용 : 문화예술시설 불균형 해소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센터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 운영

나. 조문 검토

- 안 별표1 :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에 “성북문화예술 교육센터”를 추가함.
- 안 별표2 :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중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시설 사용료를 신설함.

다.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별표1, 시설 목록에 “성북문화예술 교육센터”를 추가하고, 별표2에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1
----------	-----

제출년월 : 2024년 6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의 별표1 시설 목록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문화예술시설 명칭 추가(안 별표1)
- 나.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중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신설(안 별표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문화예술진흥법 〉

제2조(정의)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4. 18. ~ 2024. 5. 8.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6)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꿈빛극장란 다음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성북문화예술교육 센터	교육관, 문화관, 커뮤니티 공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8길 38 (장위동 68-130)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제3조와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돈암동 51-49외)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27 (동선동4가 190)
성북 예향재(藝香齋)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97 (성북동 226-37)
천장산 우화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상월곡동 24-348)
문화공간 이육사	전시장,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종암동 65-13)
성북역사 문화센터	전시장, 교육장, 관광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1길 31 (성북동 119-5)
꿈빛극장	전문공연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4층 (길음동 1286-8)
성북문화예술교육 센터	교육관, 문화관, 커뮤니티 공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8길 38 (장위동 68-130)

[별표 2]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제18조와 관련)

1.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 (2) 준비(연습)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5) 22시 이후 철수는 준비(연습)대관료를 시간으로 나눈 비용의 200퍼센트를 적용한다.
- (6)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
- (7)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 (8) 부지가액 및 건물가액 사용요율은 5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대관료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 기준/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행사	
공연장	오전 10:00~12:00(2시간)	28,000	56,000	부가세 포함
	오후 13:00~17:00(4시간)	56,000	112,000	
	저녁 18:00~22:00(4시간)	56,000	112,000	
	1일 10:00~22:00(10시간)	140,000	280,000	

다. 별도 대여 물품

구분	품 명	규 격	금액 (단위:원)	비고
영상	빔프로젝터	7,000 ansi	50,000	- 1일/1대

라.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2.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3. 성북구 동네마당 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4. 성북 예향재(藝香齋)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로 하며 사용 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안채, 사랑채	1일 (09:00~18:00)	10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 천장산 우화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9시간(10:00~21:00)으로 한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 (2) 준비(연습)/철수 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 (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5) 빔프로젝트를 포함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부가세 포함)
- (6)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대관료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기준 /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행사	
공연장	1회 / 3시간	25,000	50,000	부가세 포함
	1일 / 9시간	70,000	150,000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6. 문화공간 이육사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교육장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7. 성북역사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교육장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8. 꿈빛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 (2) 준비(연습)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5) 22시 이후 철수는 준비(연습)대관료를 시간으로 나눈 비용의 200퍼센트를 적용한다.
- (6) 빔 프로젝터를 제외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
- (7)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대관료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 기준/ 단위 : 원)			비 고
	준비(연습)/철수	공 연	토·일·공휴일(공연)	
10:00~12:00(2시간)	50,000	100,000	120,000	부가세 포함
13:00~17:00(4시간)	100,000	200,000	240,000	
18:00~22:00(4시간)	100,000	200,000	240,000	
10:00~22:00(10시간)	250,000	500,000	600,000	

다. 대여 물품

품 명	규격	금액 (단위:원)	비고
프로젝터	7,000 ansi	20,000	
핀마이크		20,000	
피아노	185	20,000	조율 별도
덧마루	1800×900(12ea)	30,000	대관자 설치·철수
댄스플로어	무대전면	40,000	테이프 별도

9.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교육장	1시간 (09:00~18:00)	1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문화예술시설을 별표1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이 용 철